

제16회 법무사 1차 시험

핵심 요약 정리

헌법 권순현 교 수
상법 이상수 박 사
가등 설재순 법무사
집행 배병한 법무사
상등 전성재 법무사
부등 유석주 법무사
공탁 김경태 법무사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서울법학원 ☎ 887-9161

법무사 H-PASS 연간 학습일정

▣ 합격은 기본서의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O T : 매년 8월 하순 14:00~15:30 (본원전임 법무사님)

| | | |
|---|----------------------------------|--|
| <p>일정 : 9/1~12/31 (2차 전 과목) 2차동영상 9/1~10/24 (서류과목, 형법) 예비 순환 10/25~12/31 (총68회) 수강료 816,000원 (20%) 652,800원</p> | <p>1단계</p> <p>A코스 B코스</p> | <p>일정 : 9/1~12/31 (1차 전과목) 민법 동영상 9/1~9/30 (확인학습) 1차기본강의 10/1~12/31 (총144회) 수강료 1,728,000 (20%) 1,382,400원</p> |
| <p>일정 : 2011. 1/2~3/6 (2차 전 과목) 2차과목 동영상 지원 (병행가능 할 경우) 1차 기본이론 집중강의 (총114회) 수강료 1,482,000원 (20%) 1,185,600원</p> | <p>2단계</p> <p>A코스 B코스</p> | <p>일정 : 2011. 1/2~3/6 (1차 전과목) 1차과목 동영상 지원 (복습용) 1차 기본이론 집중강의 (총114회) 수강료 1,482,000원 (20%) 1,185,600원</p> |
| <p>일정 : 3/7~5/28 (2차 전 과목) 1차 문제풀이 (총84회) 수강료 1,092,000원 (20%) 873,600원</p> | <p>3단계</p> <p>A코스 B코스</p> | <p>일정 : 3/7~5/28 (1차 전과목) 1차 문제풀이 (총84회) 수강료 1,092,000원 (20%) 873,600원</p> |
| <p>일정 : 5/30~6/18 1차 핵심요약정리 (총36회) 수강료 468,000 (5%) 444,600원</p> | <p>4단계</p> <p>A코스 B코스</p> | <p>일정 : 5/30~6/18 (1차 전과목) 1차 핵심요약정리 (총36회) 수강료 468,000 (5%) 444,600원</p> |
| <p>일정 : 7/1~9/28 법무사 2차 동차반 (총91회) 수강료 1,183,000원 (20%) 946,400원 법무사 2차 3순환 (총46회) 수강료 598,000원 (20%) 478,400원</p> | <p>5단계</p> <p>A코스 B코스</p> | <p>일정 : 7/1~9/28 (2차 전과목) 법무사 2차 동차반 (총91회) 수강료 1,183,000원 (20%) 946,400원</p> |

동영상강의 무료지원 1·2차 강의 중 선택

| | |
|---|---|
| <p>독서실비용</p> | <p>1년 과정 수강생 50% 지원 (독서실비용은 수강료와 별도) 월 80,000 × 12 = 960,000원 중 ₩ 480,000원</p> |
| <p>▣ 1, 2, 3단계 조별학습과 학습길잡이 선생님 수시지도 (A코스 조편성) ▣ 1, 2차 정규과정 외 동영상지원은 수강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지원</p> | |

2010년 법무사1차 대비

헌법 핵심요약

제공 : 권순현 교수

* 명확성원칙위반

-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미성년자보호법(2002.2.28, 99헌가8)
- ‘불량만화’를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화”이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로 정의하고 있는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의 2 제1호(2002.2.28, 99헌가8)
-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헌재결 2001.1.18, 99헌바112)
-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는 것(2008.7.31, 2007헌가4)

*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조약

- 마라케쉬협정(1998.11.26, 97헌바65)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비준 등 위헌확인(2001.3.21, 99헌마139 병합)
- SOFA협정(1999.4.29, 97헌가1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의(나)항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정당관련 판례 중 헌법에 위반 되는 것

- 경찰청장 퇴임 후 2년간 정당이입금지(1999.12.23, 99헌마135)
- 검찰총장 퇴임 후 2년간 정치활동금지(1997.7.16, 97헌마26)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퇴임 후 2년간 선거출마금지(2004.1.29, 2002헌마788)
-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에서 정당표방금지(2003.5.15, 2003헌가9)
- 노동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1999.11.25, 95헌마154)
- 1인 1표하에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001.7.19, 2000헌마91)

*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심사기준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취한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1997.1.16, 90헌마110·136병합).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

-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재판 단계에서 재소자용 수의를 입히는 것
-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으로 한 것
- 유기도주차량치상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죄의 법정형보다도 무거운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
- 유치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 유치장 신체과잉(알몸)수색. □ 교도소내 계구의 과잉사용. □ 사죄광고명령.
- 호주제. □ 개명신청거부(대판 2005.11.16, 2005스26).

***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헌재결 1997.3.27, 96헌가8)
-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2004.9.23, 2002헌가17)
-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강제채취(2006.7.27, 2005헌마277)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최근판례**

-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인격 또는 사생활의 핵심에 관련되는 질병명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2007.5.31, 2005헌마1139)
-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은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2008.10.30, 2006헌마1401·1409병합).
-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는 공무담임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008.4.24, 2006헌마402).
- 업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 헌법 제17조 및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2008.5.29, 2005헌마137).

***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경우**

-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 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제작 및 판매, 보관의 사전심의
- 공연윤리위원회의 비디오복제에 대한 사전심의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 외국비디오물 수입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
-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영리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추진위원회의 추천제도
-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2008.10.30, 2004헌가18).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2008.6.26 2005헌마506)

***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판례**

- 야간옥외집회의 원칙적 금지(2009.9.24. 2008헌가25)…헌법불합치.
- 국내주재 외국외교기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2003.10.30. 2000헌바67·2000헌바83 병합)…위헌.
-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금지(2005.11.24. 2004헌가17)…합헌.
-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금지(2009.12.29. 2006헌바20)…합헌.

*** 환경권에 대한 판례**

- 환경침해의 직접적 피해자보다는 넓게 인정하여, 공해와 관련된 모든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7.7.22, 96다 56153).
-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대판1984.6.12, 81다588).

□ 대법원은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완성되는 경우에 그로 인해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이 방해 받게 된다면,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4.10.28, 2002다63565).

□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1995.5.23, 94마2218).

* 최근 주요 헌재판례(09.6 ~ 10.5)

□ 헌법재판소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07.30, 2008헌가16).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009.10.29, 2008헌마635).

□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법익의 균형성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정식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중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부분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2009.12.29, 2008헌마141).

□ 상위법인 행정사법 제4조에 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행정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행정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으로 박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2010.04.29, 2007헌마910).

□ 헌법재판소는 2010년 5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인 초기배아들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배아생성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잔여배아에 대해 5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0.05.27, 2005헌마346).

상법 핵심요약

제공 : 이상수 박사

[상법총칙]

<상인>

1.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고, 타인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이 아니다.
2. 영업으로 하는 것은 계속적,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계획하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상인의 상인자격취득시기에 대해 개업준비행위시(객관적 인식가능설)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이란 영업주의 그 영업에 관하여 영업주에 종속되어 대리권을 갖는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된다.
2. 상업사용인은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있다.
3. 지배인은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제한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표현지배인규정은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

1. 자기의 성명이나 기타 명칭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
2. 상호자유주의의 제한내용(제19조 내지 제24조) 법조문 확인요망.
3.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호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4.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 2년 이상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상업등기>

1. 상법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기 전에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상법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등기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의 또는 과실은 등기신청인(영업주나 그의 대리인, 회사의 대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판단한다.

<영업양도>

1. 회사나 개인상인이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 영업양도의 효과 정리요망(법조문 중심, 기출판례내용도 함께 정리).
3. 합병과의 차이점 정리요망.

[상행위]

<총칙>

1.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 되지만,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인이 하는 행위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3. 상행위의 대리는 비현명주의. 어음수표의 대리는 현명주의.
4. 상사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단기시효규정 확인요망.
5.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 특별상사유치권(제91조, 제120조 확인요망)

<익명조합>

1.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노무나 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3. 익명조합원은 이익의 분배는 손실을 전보한 후에만 가능하며, 손실액이 출자액을 초과하더라도 받은 이익의 반환이나 증자를 할 의무가 없다.
4. 영업의 폐지나 양도, 익명조합원이나 영업자의 파산, 영업자의 사망과 금치산은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

1. 대리상은 특정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대리하는 상인이며,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당연상인이다.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2.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채권은 위탁자의 것으로 본다.
3. 자기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하고, 자기명의로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

<운송인>

1. 육상,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2.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규정 확인요망(제135조-137조, 146조, 121조).
3.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화물상환증은 상환증권성,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 문언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성의 성질을 갖는다.
4. 공권의 화물상환증의 효력에 대해 판례는 요인증권성을 중시하여, 무효로 본다.
5.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5년,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선의의 경우) 1년이다.

<공중접객업>

1. 공중접객업자는 임치한 물건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6월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묵시 또는 명시적 임치계약을 요한다.

[회사법]

<총칙>

1.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회사가 인정된다.
2. 법인격부인론의 판례 정리요망(2008년도)
3.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회사는 상업사용인이 될 수 없다. 회사는 유증을 받을 수 있다.
4. 회사의 종류에 따른 사원의 책임 차이 암기요망

<주식회사>

(설립)

1. 발기인과 설립중의 회사 내용 정리요망.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판례 중요.
2.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
4.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고 주식청약서 등의 서류에 회사의 설립에 찬조한다는 뜻과 성명의 기재를 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5. 회사설립무효는 인정되나, 설립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는 설립등기 후 2년내에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주식과 주주)

1.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은 액면가액 100원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2.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전면적 금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주식소각.단주처리.합병이나 영업의 전부양수.권리실행의 목적달성.주식매수청구.주식매수선택권부여시 허용된다.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내로 한정된다.
4. 소수주주권 정리요망.
5. 주식의 양도시 주권의 교부는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며, 주주명부에 대한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에 해당한다.
6.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에 대해 회사는 주주로 인정하여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례의 입장이다.
7. 주권을 점유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주권은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8. 주주명부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주주명부폐쇄기간내에는 주주의 변동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주주총회)

1.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권한과 이사회 권한사항을 구별하여 암기할 것.
2. 자본금10억미만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10일. 다만, 총사원의 동의로 소집통지생략가능하며 서면결의 가능하다.
3.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는 제한할 수 없다. 대리권을 갖는 자를 정관으로 주주로 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대리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이 인정된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에 한한다.
5. 의결권불통일행사는 3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한 회사는 불통일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판례).
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는 취소, 무효, 부존재,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주장이 가능하다.
* 취소와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은 반드시 결의 후 2월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판결은 소급효가 인정되고, 대세효가 인정된다. 주주총회결의취소의 경우에만 법원의 자유재량권이 인정된다.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
2. 비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도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된다.
3.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권한 사항중 이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암기요망.
4. 이사는 경업금지 의무와 자기거래제한을 받는다(이에 대한 해석내용 정리요망). 평이사도 감시의무를 부담한다.
5.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1주전에 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6. 이사회 의결권은 1인1의결권이고, 결의는 총이사 과반수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감사위원의 해임은 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7. 정관으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 있고,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8.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9. 대표이사는 회사의 모든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재판 외의 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이고, 표현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1.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시 피신청인은 이사이고, 직무대행자선임이 있는 때에 그 자는 원칙적으로 상무에 속하는 행위 외에는 하지 못한다.
12. 감사선임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비율은 정관으로 낮출 수 있다.
13.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는 둘 수 없다.

(신주발행)

1.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2.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현물출자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주주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며, 회사의 신기술의 개발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인정된다.
4. 통상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는 납입기일 다음날이며, 변경등기는 신주발행후 2주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정관변경)

1. 정관의 내용의 삭제.변경.새로운 문언의 부가 이외에 자구의 수정도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한다.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모두 정관변경의 사항에 포함된다.
2.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며, 주주총회결의시 효력이 발생한다.
3. 정관변경은 주주평등의 원칙이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사채)

1. 주식과의 비교내용 정리. 사채발행사항의 제한 정리 요망.
2. 주주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3. **주주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사항의 결정은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4. 주주는 주식수에 따라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5. 전환사채무효의 소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산.청산)

1. 주주가 1인인 경우는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의해산은 특별결의사항이다.
2. 회사가 해산하더라도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절차가 종료한 때에 법인격이 소멸한다.
3.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되며, 정관으로 또는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청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법원에 선임청구도 가능함.
4.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한다.

(회사의 합병.분할)

- 어떤 회사간에도 합병할 수 있다. 합병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지만,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이사회결의로 갈음할 수 있고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채권자보호절차를 위반한 때에는 합병무효의 사유가 된다. 합병비율의 불공정도 합병무효의 사유가 된다.
- 합병의 효력은 합병등기시 발생하며,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이전한다.
-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에 반대한 채권자는 주장할 수 있지만, 합병에 찬성한 채권자는 주장할 수 없다.**
- 주식회사에서만 회사의 분할이 인정되며, 분할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다.
- 분할의 효과로 분할후의 회사는 분할전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어음법.수표법]

(총론)

- 어음위조의 경우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위조자는 어음취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전의 문언에 따라,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위조의 입증책임은 소지인이 부담하며, 변조의 경우에는 변조가 명백하면 소지인이 부담하고 변조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 어음의 선의취득은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인정된다.
- 어음항변사유 암기요망(물적항변과 인적항변사유).
- 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소구권은 1년, 재소구권은 6월이다. 다만, 수표의 소구권과 재소구권은 6월이다. 지급보증인의 책임은 1년이다.
-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채권자가 어음법상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권리구제수단도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의 교부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발행)

- 어음요건 암기(어음법 1조, 75조, 수표법 1조).
- 백지어음으로는 어음금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가능한 때로부터 3년이다. 백지수표의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가능한 때로부터 6월이다.
-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대해 채무자는 취득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충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배서)

- 배서는 권리이전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 담보적 효력이 인정된다.
-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은 자격수여적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유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기한후배서는 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하며, 이러한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적항변의 절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수표의 지급인의 배서는 효력이 없으며,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5. 간략백지식 배서는 어음의 표면에는 할 수 없다. 어음표면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보증으로 본다.

(소구)

1. 어음에는 만기전의 소구와 만기후의 소구가 인정되지만, 수표에는 만기전의 소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소구권행사를 위한 통지는 소지인의 전자와 발행인에 대해서는 4거래일내에, 통지를 받은 자의 전자에 대한 통지는 2거래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3. 거절증서불요 또는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있는 때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구할 수 있다.
4. 소구금액은 어음금액과 약정이자, 지연이자, 소구비용이다.

(수표의 지급보증)

1. 지급인만이 지급보증을 할 수 있고, 약식지급보증이나 일부지급보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지급보증이 있더라도 발행인이나 배서인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지급보증인의 책임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보험법.해상법]

(보험법-총칙)

1. 보험약관교부 및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후 1월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의 지급과 함께 청약한 때에는 승낙 전이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고지의무는 법조문 외에 그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여 기억하여야 함(제651조, 제651조의2).
4. 보험자는 최초의 보험료를 수령한 때로부터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보험계약의 무효사유(보험사고의 발생불능이나 이미 발생한 경우,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 15세미만자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경우).
6.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손해보험)

1. 보험계약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내용(제669조 내지 제673조 법조문 정리).
 - * 초과보험과 중복보험 내용 정리.
3. 보험자는 목적물의 전손의 경우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4.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인보험)

1. 인보험에는 보험자대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타인의 생명의 보험의 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있어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3.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무효이다.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5.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수익자 지정권.변경권이 인정되며, 지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보험수익자 지정권.변경권에 관한 제733조 조문 확실히 익힐 것.

(해상법)

* 해상법은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우선특권, 개품운송인과 여객운송인의 책임, 선하증권, 공동해손에 관한 기출문제 확인요망.

민법 최신중요판례 정리

제공 : 이준현 교수

1.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에 당연히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3. 부재자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한 권한초과행위의 효력(유효)

4.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 없는 추인행위 후에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이 있는 경우 추인의 효력 유무(적극)

5. 호적상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 가부(소극)

6.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위 소 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7.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8.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단체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당해 종단의 신도 아닌 사람을 종단 대표자의 결원으로 인한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0.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1. 중중 관련 최신판례

① 연고항존자인지 여부는.....소집통지 대상 중중원의 범위 확정을 위하여 족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면 소집통지 대상자에 대응하는 소집권자인 연고항존자의 확정도 그 족보를 포함하여 판단함이 상당...

②중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중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중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중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중원에 관한 족보가 발간되었다면....족보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족보에 의하여 중중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중중의 범위를 확정....반드시 사건 당사자인 중중이 발간한 것일 필요는 없고 그 중중의 대중중 등이 발간한 것이라도 무방....

④ 중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통지가 가능한 모든 중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중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종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남자 종종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종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⑤ 종종 족보에 종종원으로 등재된 성인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종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

⑥ 종종 소유의 재산은 종종원의 총유....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종 규약.... 종종 규약이 없으면 종종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종종 대표자에 의한 종종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

⑦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종종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종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⑧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종종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종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종은 고유의 의미의 종종만을 가리키고, 종종 유사자의 비법인 사단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

1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3. 민법상 토지가 간석지로 된 경우에도 포락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4.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 소유인 물건이 종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16.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가 백화점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17. 횃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어서 횃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18. 건물의 정화조가 종물인지 여부(소극)

19. 구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 또는 예약의 효력(무효)

20.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1. 부동산중개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 초과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 소극)

2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시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3. 통정허위표시 관련 판례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제3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

24.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5. 토지경계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적극)
26.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소극)
27.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8.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9.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0. 무효행위의 추인 관련 판례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3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불확정기한으로....
32.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 :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당사자 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
32.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의 방해에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3.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 :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34.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35.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6.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8.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9.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건물 완공시)
40.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41. 요건을 갖춘 소송고지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의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43. 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44.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4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 유무(소극)
46.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제3취득자)
47.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무효)
48.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가 등기 없이도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9.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가 등기 없이 목적토지의 소유자나 전득자에게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0.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임조례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위임을 하여 수입관청이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위임관청이 그 토지를 간접점유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51.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 관련 판례
- ①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국가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국가가 점유 개시 당시에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것은 아니고....
- ③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
52.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54.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에 반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무효)
5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중첩적 채무인수)
57.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8.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9.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에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시효주장자)
60.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1. 새로이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2. 등기부상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3.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당사자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
64.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의 대상 및 무과실의 입증책임 :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
65. 민법 제251조가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251조는 민법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91.3.22. 91다70).
66.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의 소유권귀속관계 :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

계 귀속...

67.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 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68.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 받아 진행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70.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하면서 전체에 대한 지분등기를 가진 자의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7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양수인이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당해 구분공유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지 여부(적극)
72.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73.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4.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75.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의 부담에 관하여 민법 제26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6. 민법 제2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의무이행지체를 이유로 지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먼저 매수대상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77. 대금분할 요건의 구체적 심리 없이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 사정에 터잡아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8.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79.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80.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8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2. 부동산 소유자가 그 중 일부 지분을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은 경우, 그 법률관계(=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
8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84.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8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확정관계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수탁자)
8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87.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로써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8.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89.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련 판례
- ① 토지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당해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 ②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러한 상태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90. 채권담보 목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없이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원칙적 유효)
91. 기존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2.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가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3.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 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94.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5.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96.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유치권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
97.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98.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실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9. 민법 제352조에 위반한 질권설정자의 행위의 효력 :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100. 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
10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102.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건물을 토지의 중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경락된 경우,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03.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저당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104.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05.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을 개축, 증축하거나 그 건물의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 신축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적극) 및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
106.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07.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108.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09.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은 후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0.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더라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도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1.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실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2.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113.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4.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115. 신원보증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116.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17.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금)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18.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약정에 기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119. 甲 회사가 乙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기일까지 일정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보증금을 乙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120.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1.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22.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3. 어음채권의 추심 의뢰 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지급제시)의 사실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4.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5.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
126.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별도로 최종적 법률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제한적 적극)
127. 매매계약 해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28. 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29.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 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30.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3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자(=수익자)
13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133. 채무자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 그 취소된 담보권자가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34.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중 다액의 채무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단독부담 부분)
135.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바로 어음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36.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37.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138. 법원이 구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39. 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사후승낙을 통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40.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41.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14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중첩적 채무인수)
143.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44.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 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45.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자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46.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면책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47. 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었던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4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149.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또는 압류채무자를 임의로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50. 경계의 법적 성질 및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1.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명시·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인지 여부(적극)
152.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는 법리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53.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154. 창고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유치권의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155.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전형계약 내지 채권적 권리의무관계가 포괄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무들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56.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157.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 인정여부(소극)
158.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159.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건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는지 여부(적극)
160.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161. 민법 제552조에 의하여 해제권이 소멸된 경우, 그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162.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체에 대해 수증자가 실제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63.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지 여부(소극)
164.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대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건물의 일부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데 건물의 일부가 그 피침범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로 존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민법 제572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적극)
165.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66. 사용대차계약에 있어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이 있는지 여부(소극)
167.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168.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 인정여부(소극)
169.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70.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등기부상 지번과 상이하게 된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에 따른 주민등록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17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72.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173.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적극)
174.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175.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제706조 제2항이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76.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인 경우 조합원들의 연

대책임 유무(적극)

177.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통상의 보수 상당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78. 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그 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79.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착오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80.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상계의 유효성(원칙적 적극)
181.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상계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8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83. 불법원인급여 후 급여 그 자체 또는 그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그 자체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184.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당사자)
185.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정한 ‘악의’의 의미 및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86. 확정판결의 취득 혹은 그에 기한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당사자가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87. 부동산중개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 초과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8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의 개념(차액설)에 관한 판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189.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불법행위시)
190.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91.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하여 그 수분양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함께 일반분양을 강행하는 경우, 제명된 조합원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92.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193.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위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가....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

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194.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195.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제781조 제6항....'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衡量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분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

196.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구체적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유책하게 위반한 경우, 부부의 일방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7.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198.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관련 판례

①제840조 제6호....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

②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핍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199.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01.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02.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3.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유효)

205.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6.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7.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의 의미 및 유언집행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핵심정리

제공 : 설재순 법무사

1.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외국인이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직접 시(구)·읍·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내 거주를 소명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3.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2조제4항단서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출생·사망신고서를 제출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 신고인의 신분도 확인하여야 한다.
5. 창설적 신고의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출석한 본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거나 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의 경우 신고서의 서명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포함한다)나 거주국 공증인(대한민국 공증인도 포함한다)의 공증을 받으면 되고, 공증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와 협의이혼의 신고에 대하여는 본인들 중 한쪽이 불출석하였다도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6.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신고는 그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그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신고기간도 위 취임일로부터 진행된다.
7.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제1항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고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81조제1항단서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9. 협약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협약서는 혼인신고서와 별도로 접수하여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동시에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기록하되, 혼인신고서에 가철하여 보존한다.
10.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11.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12. 이름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13. 다태아의 출생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할 때에는 출생연월일 이외에 시분까지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4.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5.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민법」 제908조의3에 따른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도 개명할 수 있다.
16. 과양된 친양자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성본변경, 가족관계증명서의 친생부모의 정정사항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친양자가 과양 신고 당시에 미성년인 경우에는 친권종료 및 후견종료의 기록은 이기한 후 친권자지정 및 후견개시를 다시 기록하되, 선임후견인의 경우 법원의 후견인 선임을 다시 받아야 한다.
17.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3조에 따라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9.3.31>
18. 포태 중인 자에 대한 친권자지정 신고는 이혼신고 시 수리하지 않고, 포태 중인 자의 출생 신고 시 수리한다. 이 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포태 중인 자의 친권자지정 신고기간은 출생 시부터 기산한다.
19. 협의에 의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도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말소하고,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20.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1.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종전 호적상의 호주 또는 가족이 다른 가족 또는 호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사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은 할 수 없다.
23.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경우에도 부활할 필요 없이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것인 경우에는 그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24.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결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는 없다.
2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
26.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7.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 입양, 인지신고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서류의 원본을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그 등본을 별도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 사이의 신고서류 원본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한다.

28.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폐쇄 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하여 폐쇄 후에 신고적격자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가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간이직권기록한다.
29. 신고적격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하면, 접수한 등록관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제18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등록관서의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직권기록한다.
30.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31.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소명자료로 인우인보증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인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출제 예상 최근 판례(2008~2010)

제공 : 배병한 법무사

- ①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②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 ③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 ④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위 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 ⑤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는 요건을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을 비롯한 특별항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심사해야 하고, 이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 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결정 등을 파기할 수는 없다.

⑥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에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⑦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청구권 등에 기하여 하는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먼저 송달되고, 그 후 가처분 채권자가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⑧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현금화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채무자가 심문을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⑨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⑩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 다만, 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⑪갑이 남편인 을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을이 사망하자 을의 재산을 상속한 후, 을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갑은 위 매각절차에서의 채무자로서 매수신청이 금지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

⑫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⑬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⑭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⑮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⑯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⑰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채권자는,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다.

⑱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

⑩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⑪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⑫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⑬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와 병행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정해진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⑭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시기는 배당표가 확정된 때부터이다.

⑮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유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여기에 집행법원의 재량이 허용될 여지는 없다.

⑯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변상할 집행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변상 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⑰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⑱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⑳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㉑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㉒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룰 수 없다.

⑪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⑫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⑬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⑭채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로서는 채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⑮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⑯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채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⑰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⑱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인데, 특별항고는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⑲담보권 실행 또는 민법 제342조의 물상대위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의 실체상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⑳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㉑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다.

㉒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

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별소를 제기하고 위 소를 취하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민사집행법 제139조(공유자 우선매수)는 공유물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에서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고, 공유물 지분의 경매라도 경매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⑤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⑦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⑧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⑨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⑩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

⑪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그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경락되고 그 대금이 완납되면, 설사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라 할지라도 경매과정에서 이를 존속시켜 경락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취지의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이상 위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범위에서는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하여 소멸한다.

⑫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⑬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한다. 이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목적물은 원칙적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⑭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⑮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상업등기법 핵심요약정리

제공 : 전성재 법무사

1.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2.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 시 구분점의 등기기록과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소멸회사의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하다.
3. 비상임당연직이사 인사발령공문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4.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제출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5. 인증을 받은 후 설립등기 전에 그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대하여 다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정관 인증에 관한 사무는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다.
6. 주식회사의 감자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만 납부하면 될 것이다
7. 법인설립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
8.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9. 1개의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1개의 법인을 대표하는 여러 명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

10.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11.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를 기간에 관계 없이 연속하여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12. 첨부정보 중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3. 공동대표이사 등이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한 후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고, 지정된 다른 사람은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14.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선임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15.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또는 청산종결등기는 직권에 의한다.
16. 주식회사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이사 6명이 선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3인만 등기신청 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없다.
17.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8.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본점 관할 등기소에 본점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함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20.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21.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22. 정관에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도 상호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23. 회사가 지배인 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4.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25.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에 보고한 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26.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본점 소재지 등기소에만 그 등기 촉탁을 하고, 신본점 소재지 등기소는 그 촉탁에 따라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구분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뜻을 통지하며, 구분점 소재지 등기소는 그 통지에 따라 폐쇄된 구분점등기를 회복한다.
27. 지점설치에 따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정한 설치일 이전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8. 정관으로 그 임기를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사업년도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9.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30.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이 중임일이 된다.

31. 주식회사·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써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이사·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32.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이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는 위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34.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35.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 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6.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 미만인 되는 주식의 전환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7.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분리형 사채를 발행하고 그 행사기간 중에 사채를 모두 상환하는 경우에는 사채 전부를 말소할 수 없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을 0원으로 기록하되 나머지는 그대로 다시 기록하여야 하고, 비분리형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이 소멸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다.

38.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상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면 되고 따로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상환예정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9.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는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40.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흡수하고 합병함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한 후 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1. 청구인낙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회사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나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2.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3.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을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였다면 그 청산인이 그에 따른 등기를 파산자인 위 합자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위 청산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시험장 요약집 75選

제공 : 유석주 법무사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바, 그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하천에 대하여 할 수 없는 등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3. 토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 (1) 후등기용지를 폐쇄한다. (2) 후등기용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용지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용지를 폐쇄한다.
4.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 (1)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2)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후행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이점 3(2)와 비교].
5. 토지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 (1) 규칙 제116조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 - 규칙에 따라 정리한 다음 등기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 (2) 규칙 제118조와 제119조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 -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도 이를 수리.
6. 건물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 (1)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 선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 (2)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
7.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해당하는 것 : 등기신청서, 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 등기신청취하서(○),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공장저당목록, 공장재단 목록(×)]
8. (1) 전산등기부의 경우 발급이 불가능한 것 : 일부사항증명등기부초본 (2) 수작업등기부의 경우 발급이 가능한 것 : 말소사항포함등기부등본, 특정인지분등기부초본, 일부사항증명등기부초본
9.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1) 잔금완납일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잔금완납일로부터, (2) 잔금완납일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0.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 : 태아, 민법상 조합, 사립학교,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부, 區중 행정구[자치구는 가능]
11. 개방형축사의 보존등기 : ① 등기할 수 있는 개방형 축사란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들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추어 있을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200㎡를 초과할 것 ② 신청서에 신청근거규정을 기재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 호’ ③ 신청서의 첨부서면 : 건축물대장등본, 건축허가신청서(건축신고서) 사본,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면, 도면 ④ 등기의 실행 :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라고 기재

12. 이행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임. 다만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함.
13. 형성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과 “판결확정일”임.
1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갑)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을)는 채무자(병)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병 대위신청인 을”과 같이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는 “갑”을 기재한다.
15.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1)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소유권이전등기제외)가 경료된 경우 → 공유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와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공유자는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그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곧바로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6.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7.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18.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취득할 수 있지만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교회나 영리법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한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된 ‘농지취득자격미발급통보서’에 의하여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종전에는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통지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20. 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1.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허가서와 원인증서를 첨부하여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시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허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거래신고나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3.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서 필요 (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종전의 공유지분보다 더 많은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24.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본인 명의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을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자신은 폐업한 경우, 갑은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5.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지만,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다.
26.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임을 요하지 않는다.
27.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8.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 자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①②항목 모두 삭제되었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세무서장확인서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즉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29.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상속인이 판결을 받은 경우임]
30.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여 매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원고)과 등기권리자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증명하는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피상속인이 판결을 받은 경우임]
31.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이 신청인이 행정관서 등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첨부서면은 성질상 환부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최근의 법원행정처의 견해이다. 또한 신청서 자체와 등기후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등도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2.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 중 등기부상 그 권리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등기필증(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가등기, 권리변경(경정)등기, 권리 일부이전등기, 권리일부말소등기 등의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
33.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 보존, 설정, 이전, 가등기 및 이전,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갑 단독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나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34.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부동산표시변경, 위 33.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변경·경정(채무자변경, 채권최고액변경, 존속기간변경 등)
35. 등기필정보를 받지 않는 자 - 승소한 등기의무자, 대위채권자, 패소한 등기권리자, 채무자, 직권

보존등기된 경우의 보존등기명의인

36. 등기완료통지를 받는 자 : (1) 등기필정보를 받는 자 (2) 공동신청에서의 등기의무자(원하는 경우) (3) 위 (2)을 제외한 신청인에 대한 통지 - (i)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등기권리자(예 : 근저당권말소에서 근저당권설정자) (ii) 단독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예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인) (iii) 승소한 등기의무자 (iv) 채권자대위등기에서의 채권자 (4) 신청인이 아닌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통지 - (i) 패소한 등기권리자 (ii) 채권자대위등기에서의 채무자 (iii)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의 소유자 (iv) 확인서면 작성된 경우의 등기의무자
37. 상속개시 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의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자를 순차로 모두 기재하여 1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는 먼저 개시된 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한다.
38. 특정적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적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39. 토지수용절차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지역권등기도 원칙적으로 말소의 대상임을 주의할 것).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공유자의 상속인들은 먼저 상속등기를 거친 후에만 위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1.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기존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42. 합유자 전부의 동의가 있으면 합유물에 대하여 용익물권 혹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공유상태에서 공유물전체에 대한 지상권이나 근저당권을 갖는 자(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경료된 처분금지처분권자도 마찬가지임)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승낙 없이도 합유로의 변경등기는 허용된다.
43.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단독신청×, 직권말소×)에 의하고,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재한다.
44. 허용되지 않는 것 : (1) 주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등기 →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 (주택건설대지 및 분양주택에 대하여서는 가능) (2) 임대주택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등기 → 임대주택의 택지 × (임대주택에 대하여서는 가능)
45. 판결에 의한 등기시 등기관이 심사할 사항 : (1) 명의신탁약정일이 1995. 7. 1.이전인지 여부 (2) 실명법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는 지 여부 (3)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신청하는 지 여부.
46. ①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등기 등의 말소규정(부칙 제2조)에 의한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권리존속신고의 가능여부 → 그 대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가능 ②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상등기에 대하여 부칙에 따른 등기관의 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말소할 수 없음 ③ 권리존속

신고의 부기등기가 없는 대상등기에 대한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 등기신청을 수리함

47. ① 위조등기부 → 등기관이 직권말소(위조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함,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만 통지함), ② 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조등기부 → 등기부의 표제부에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이 있다는 취지의 부전을 함(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사실을 등기부상 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 또는 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 등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함).
48.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 등 -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지만 근저당권에서는 등기근거규정이 없음.
4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0. [저당권의 경우] 1인의 저당권자가 2인 이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각 다른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근저당권과는 달리 채무자 별로 채권액을 기재하고, 채권액으로는 그 합계액을 기재한다.
51.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각 부동산 사이의 공동담보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현행 등기법제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2.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 공용물의 소유자는 그것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한다.
53. 토지와 공장건물의 소유자는 상이하고 공장건물의 소유자와 공장에 속하는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공장건물만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으로 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보통 근저당으로 하여 공당담보로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4.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55. 법 제90조의4 규정에 의한 합필등기 : 합필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의 단독으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56.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추가저당권설정등기신청 →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② 추가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 구분건물 외에 대지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예의 기재 → 구분건물의 등기부 울구에만 기재 ④ 토지등기부 → 종전 저당권등기에 저당권담보추가의 부기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위 예규). 구분건물에 저당권설정을 한 이후에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이다[추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등기부 울구에만 이를 기재하고, 토지등기부에는 별도의 등기기재를 할 필요가 없다].
57.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권리변경등기신청절차에서 이해관계 있

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위신청인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58. (1)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하는 경우 → 토지의 분필등기 (2)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하는 경우 → 토지의 분합필등기(합병등기)
59. (1)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로 한 경우 → 건물의 분할등기 (2)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 →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60. 대지사용권이전등기의 몇 가지 특성 : [대지사용권이전등기의 강제성][대지사용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중간생략등기의 허용][대지사용권사후취득시에도 준용][대지권등기와의 동시신청]
61.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등기원인증서(제40조제1항제2호) 및 주소에 관한 서면(제6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분양자의 인감증명은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매도용일 필요는 없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구분건물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주소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한다. 한편 등기원인은 ‘○년 ○월 ○일 건물 ○동 ○호 전유부분의 취득’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일자는 현 구분건물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
62. 1필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지분만이 그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된 경우에도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비율의 표시는 그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된 소유권의 일부지분 중에서 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차지하는 비율로서가 아닌 토지 소유권전부에서 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하여야 할 것이다.
63.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비율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는 한 나머지 지분비율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64.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65. 권리 자체를 경정(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거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66.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6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68.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그 착오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승낙서를 첨부하여도 할 수 없다.
69. 등기완료 후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신청과 다른 내용으로 등기된 경우를 말함)를 발견한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공동신청할 필요가 없음을 주의할 것) 등기필증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 부분을 첨부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70. 갑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의 과오로 그 등기기입을 유류하였고, 그 후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직권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유류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 71.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는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복등기를 소구할 수 없고, 판결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하는 것이 아님
- 7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 : 직권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이다.
- 73.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② 직권보존등기 ③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 ④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⑤ 추가저당권설정 ⑥ 담보가등기 ⑦ 말소회복등기 ⑧ 소유권이전·토지소유권보존시 시가표준액[주택 = 2천만원, 토지 = 5백만원, 기타 =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⑨ 상속(증여·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⑩ 저당권설정·이전은 채권액 혹은 이전하는 채권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저당권설정시 채권매입금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 74. 등기신청수수료 ① 보존, 이전, 설정, 가등기, 환매특약 [서면방문신청 = 14,000원, 전자표준양식 = 10,000원, 전자신청 = 6,000원] ② 변경, 경정, 건물멸실, 말소, 말소회복,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환매권변경,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서면방문신청 = 3,000원, 전자표준양식 = 2,000원, 전자신청 = 1,000원] ③ 면제되는 경우(토지표시변경, 토지멸실, 예고등기, 멸실회복, 파산·화의·회사정리, 신탁, 신탁말소)
- 75.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1천만원 이하의 소유권이전 ② 주택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소유권이전 ③ 지상권·전세권·지역권·임차권 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⑥ 증여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⑧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

공탁법 핵심요약정리

제공 : 김경태 법무사

1.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의 발송

| 구 분 | 개 정 前 | 개 정 後 |
|----------------|---------------------------------|--------------------------------------|
| 대상 공탁 (대상자) | 변제(피공탁자), 재판상 보증(피공탁자 및 공탁자) | 변제(피공탁자), 집행(피공탁자) 재판상 보증(공탁자) |

※ 절대적 불확지, 주소불명의 경우 : 발송 (X).

※ 가압류 반대급부조건 등이 있는 경우 : 발송 (O)

2. 공탁금 회수청구의 제한신고

| 개 정 前 | 개 정 後 |
|----------------|------------------|
| 무죄 또는 종국재판의 확정 | 불기소 결정 또는 무죄의 확정 |

※ 불기소에서 기소유예는 제외.

※ 집행유예선고는 유죄의 선고임

3. 양도통지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가. 출급청구의 수락으로 인정된다.

나. 양도인의 지급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 양수인이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증된 양도증서를 제출하거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변제공탁에서 공탁통지서의 제출

| 개 정 前 | 개 정 後 |
|---|---------------------|
| ① 우표를 붙인 봉투를 제출 ② 봉투의 수신인란에 피공탁자 주소 기재 | 우표만 제출 (봉투제출 안함) |

5. 공탁법 제9조 제3항 신설 (소멸시효)

| 공탁물 | 지급청구내용 | 기산일 | 기간 |
|---------------------------------|------------------|------------------|-----|
| 금전, 유가증권의 상환금, 배당금, 물품공탁물의 매각대금 |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 10년 |

6.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다음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가. 공탁자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 주소불명을 소명하는 서면에는 유효기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인감증명서**

7.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8.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정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 증명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변호사)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9.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인 **공탁통지서의 제출의 면제**

가. 출급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나. 공탁서를 첨부한 경우
- 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라. 강제집행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마. 채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바.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는
공탁통지서의 제출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1. 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인 공탁서의 제출의 면제

- 가. 회수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 회수청구의 경우에는 출급청구와 달리
공탁통지서의 첨부로써 공탁서의 제출이 면제 되지 아니한다.
- 다. 강제집행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라. 채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12. 보증서의 제출

- 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 공무원의 재직증명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다.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3.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출급·회수의 경우에만 사실확인을 하고,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사실확인 은 하지 아니 한다.

- ※ 자격자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이 대리하여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자격자대리인이**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인은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하지 아니한다.)

14. 인감증명서 제출의 면제

- 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 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로 본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출급·회수청구 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 이더라도 임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가. 출급·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유가증권의 총액면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나.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다.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라. **배당 등에 따라** 공탁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권자의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바. 공탁물이 **액면금액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인 경우와**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5.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16. 공탁물품의 매각·폐기 등

- 가.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 매각 또는 폐기허가 재판은 신청으로만 할 수 있을 뿐 직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매각 또는 폐기허가 재판의 변경재판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다. 공탁물품의 매각은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다만, 공탁물보관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라. 법원은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의 허가나 변경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다.

그 밖에 재판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마.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의 허가나 변경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17. 열람 및 증명청구

가.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열람 및 사실증명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의 날인 및 인감증명서의 첨부

하지 아니한다.

※ 위임에 다른 대리인이 자격자 대리인이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탁서정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청구를 하는 사람은 열람신청서나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신청서나 청구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바. 공탁관은 열람신청이나 사실증명청구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해줄 수 있다.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한 당신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

2010년 “2차 합격” 꿈을 현실로!

법2차 3순환 HI-PASS반

법무사 2차 최강의 강사진



| | | | | | |
|-------------------|------------------|----------------|------------------|-----------------|-----------------|
| | | | | | |
| 민법/민소법 박효근 법무사 | 형 소 법 김영환 선 생 | 형 법 송춘근 선 생 | 부 등 법 오경조 법무사 | 민사신청 배병한 법무사 | 등기신청 유석주 법무사 |

● 3순환일정 : 7/12~9/2 수강료 552,000 원 ----> 20% 할인 : 441,000 원 (46회)

| 과 목 | 강 사 | 일 정 | 시 간 | 교 재 | 회 수 |
|-------|---------|-------------|---|-------------------------------|-----|
| 민 소 법 | 박효근 법무사 | 7/12 ~ 7/20 | 월 ~ 토 09 : 00 - 13 : 00 매일 모의시험 후 강평 배점에 따라 시험시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과목은 2회 분량 시험 후 강평 | 각자 기본서 + 저자 교재 및 저자 부교재 | 8 |
| 민 법 | 박효근 법무사 | 7/21 ~ 7/31 | | | 10 |
| 형 법 | 송춘근 선 생 | 8/ 2 ~ 8/ 9 | | | 7 |
| 형 소 법 | 김영환 선 생 | 8/10 ~ 8/17 | | | 7 |
| 부 등 법 | 오경조 법무사 | 8/18 ~ 8/24 | | | 6 |
| 등기신청 | 유석주 법무사 | 8/25 ~ 8/28 | | | 4 |
| 민사서류 | 배병한 법무사 | 8/30 ~ 9/ 2 | | | 4 |

(실전모의고사[총46회] 모의고사+첨삭채점+최고답안+강평+과목별 주요 포인트 정리 및 예상문제배부)
 * 3순환 모의고사 만 종합반 신청 시 230,000원 ---> 20% 할인 (184,000원)

● 최종정리 일정 9/6~10/9 시 간 : 월~토 09:00 ~ 12:30 수강료 288,000 원 (총24회)

| 과 목 | 강 사 | 일 정 | 회 수 | 과 목 | 강 사 | 일 정 | 회 수 |
|-------|---------|-------------|-----|----------------------------|---------|------------|-----|
| 형 소 법 | 김영환 교 수 | 9/6 ~ 9/8 | 3 | 형 법 | 송춘근 교 수 | 9/9 ~ 9/11 | 3 |
| 민 소 법 | 박효근 법무사 | 9/13 ~ 9/16 | 6 | 민사서류 | 배병한 법무사 | 9/17, 18 | 2 |
| 민 법 | 박효근 법무사 | 9/27 ~ 10/2 | 4 | 최신 판례와 핵심판례, 주요논점 중심의 정리 ! | | | |
| 부 등 법 | 오경조 법무사 | 10/4 ~ 10/7 | 4 | 등기신청 | 유석주 법무사 | 10/8, 9 | 2 |

종합모의고사 일정 : 10월 11일, 12일 시간 : 실전 시험과 동일 응시료 : 40,000원
 본원 예비순환~3순환(동차반 포함)까지 종합반을 1과정이라도 수강시 무료응시

SLA 서울法學院

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300m 거리 (관악구청 맞은편)
 문의사항 : 887-9161~3 / 871-9161~2 Fax : 871-9163 www.seoulsla.com

2010년 “2차 합격” 꿈을 현실로!

법2차 동차합격 HI-PASS반

법무사 2차 최강의 강사진



| | | | | | |
|----------------------|------------------|-----------------|-------------------|--------------------|--------------------|
| | | | | | |
| 민법/민소법 박효근 법무사 | 형소법 김영환 선생 | 형법 송춘근 선생 | 부등법 오경조 법무사 | 민사신청 배병한 법무사 | 등기신청 유석주 법무사 |

● 2차기본강의 단기특강 일정 7/1~9/28 수강료 1,080,000원 → 20% 864,000원 (91회)

| 과목 | 강사 | 일정 | 시간 | 교재 | 회수 |
|------|------------|-----------------------------------|------------------------|-------------------------|----|
| 형소법 | 김영환 교수 | 7/1 ~ 7/16 | 월 ~ 토 09:00-13:00 | 이재상 저 + 저자부교재 | 14 |
| 형법 | 송춘근 교수 | 7/17 ~ 7/31 단, 7/31(오전, 오후 연강) | | 이재상 저 + 저자부교재 | 14 |
| 민소법 | 박효근 법무사 | 8/2 ~ 8/19 | | 이시윤 저 + 저자부교재 | 16 |
| 민법 | 박효근 법무사 | 8/20 ~ 9/11 | | 김준호 저 + 저자부교재 + 강의교안 | 20 |
| 부등법 | 오경조 법무사 | 9/13 ~ 9/28 | | 유석주 저 + 저자부교재 | 10 |
| 민사서류 | 배병한 법무사 | 7/6 ~ 7/30 | 매주 화, 금 14:00-17:30 | 민사서류/저자직강 | 8 |
| 등기신청 | 유석주 법무사 | 8/3 ~ 8/31 | | 등기신청/저자직강 | 9 |

추석연휴 9/21~9/23 강의 없음

※ 종합반 수강생에 한하여 주어지는 특전

1. 주요과목 2순환 문제 + 모범답안 + 수강생 최고답안 (서브노트 제공)
2. 동영상지원(종합반, 단과수강생, 특히 형법은 개강부터 과정 종료 시 까지)
3. 스터디 룸 주1회 무료사용, 자료정리용 바인더 제공
4. 강사님 재량에 따라 답안작성지도

최종정리특강

9/6~10/9 (총24회) 수강료 288,000원

과목별 세부일정은 2차 3순환 일정 참조

SLA 서울法學院

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300m거리 (관악구청 맞은편)
문의사항 : 887-9161~3 / 871-9161~2 Fax : 871-9163 www.seoulsla.com

2011년 대비

법무사 1차 HI-PASS

● 주간반 1순환 A코스 (기본이론강의) 일정 : 7/5~9/30 (수강료 1회 12,000원) 142회

| 과 목 | 강 사 | 일 정 | 시 간 | 교 재 | 횟수 |
|-------|------------|--|--|-------------------------------|----|
| 공 탁 법 | 배병한 법무사 | 7/5 ~ 7/26 | 월, 수 09:00 - 13:00 토 14:00 - 18:00 | 공탁법 / 저자직강 | 10 |
| 민 법 | 이준현 교 수 | 7/5 ~ 9/29 | 월~수 14:00 - 18:00 | 민 법 / 김준호 저 +친상법 / 저자직강 | 37 |
| 헌 법 | 권순현 교 수 | 7/6 ~ 8/ 5 | 화 09:00 - 13:00 목, 금 14:00 - 18:00 | 파워헌법 / 저자직강 + 저자부교재(조문·판례) | 14 |
| 상 법 | 이상수 박 사 | 7/8 ~ 8/20 | 목~토 09:00 - 13:00 | 상법강의 / 저자직강 | 20 |
| 부 등 법 | 유석주 법무사 | 7/28 ~ 9/20 <small>(단 9/9,16 오전오후 연강)</small> | 월~수 09:00 - 13:00 목, 금 14:00 - 18:00 | 부동산등기법 / 저자직강 | 22 |
| 상업등기법 | 전성재 법무사 | 7/31 ~ 9/ 3 | 토 14:00 - 18:00 금 09:00 - 13:00 | 상업등기법 / 저자직강 | 9 |
| 집 행 법 | 김경태 법무사 | 8/19 ~ 9/30 | 월~수 09:00 - 13:00 목, 금 14:00 - 18:00 토 09:00 - 13:00 | 민사집행법 / 저자직강 | 22 |
| 가족관계법 | 설재순 법무사 | 9/4 ~ 9/25 | 토 09:00 - 18:00 | 가족관계법 / 저자직강 | 8 |

※ 과목별 세부 사항은 개강 전 제공됩니다.

추석연휴 9/21~9/23 강의없음

| 향후 과정 | 강의 내용 | 강의 일정 |
|----------------|-----------------------------|-----------------|
| 1순환 B코스 (142회) | 기본이론강의 | 2010년 10월 ~ 12월 |
| 1순환 C코스 (124회) | 기본이론집중강의 | 2011년 1/2 ~ 3/9 |
| 2순환문제특강 (83회) | 문제풀이강의 | 3/10 ~ 5/31 |
| 3순환요약특강 (36회) | 핵심요약정리 | 6/1 ~ 6/18 |
| 실전모의고사 | 매년 3월~6월 (4회) 참가비 1회 7,000원 | |



오는 길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300m거리 (관악구청 맞은편)
 문의사항 : 887-9161~3/ 871-9161~2 Fax : 871-9163 e-mail:seoullaw@hitel.net

2011년 대비

법무사 1차 HI-PASS

● 야간반 1순환 A코스(기본이론강의) 일정: 7/5~10/30 (수강료 1회 12,000원) 143회

| 과 목 | 강 사 | 일 정 | 시 간 | 교 재 | 횟수 |
|-------|------------|-----------------------------------|--|------------------------|----|
| 민 법 | 신00 박 사 | 민총 7/5~7/14, 18 강의회수 9회 | 월 - 금 19:00-22:30 단, 7/18(일) 18:00~22:30 | 김준호 저 / +친·상법/이준현 저 | 35 |
| | | 물권이하 8/11~10/9 강의회수 26회 | 수 19:00-22:30 토 14:00-22:30 | | |
| 가족관계법 | 실재순 법무사 | 7/10 ~ 7/31 | 토 14:00-22:30 | 가족관계법 /저자직강 | 8 |
| 헌 법 | 송재필 교 수 | 7/15 ~ 7/30 | 월 - 금 19:00-22:30 단, 7/25(일) 09:30-17:30 | 황남기 헌법 | 14 |
| 상 법 | 허덕희 박 사 | 8/1 ~ 8/19 (8/11, 14, 18 강의없음) | 월 - 금 19:00-22:30 일 09:30-17:30 단, 8/7 토 14:00-22:30 | 상 법 /저자직강 | 20 |
| 공 탁 법 | 김경태 법무사 | 8/20 ~ 10/22 | 매주 금 19:00-22:30 | 공탁법 /저자직강 | 10 |
| 집 행 법 | 배병한 법무사 | 8/22 ~ 9/27 | 월, 화, 목 19:00-22:30 일 09:30-17:30 | 민사집행법 /저자직강 | 25 |
| 부 등 법 | 유석주 법무사 | 9/28 ~ 10/27 단, 9/29, 10/6강의없음 | 월-수, 목(9/30, 10/7) 19:00-22:30 일(10/3,10,17,24) 09:30-17:30 | 부동산등기법 /저자직강 | 22 |
| 상업등기법 | 전성재 법무사 | 10/14 ~ 10/30 | 목 19:00-22:30 토 14:00-22:30 | 상업등기법 /저자직강 | 9 |

※ 과목별 세부 일정은 개강 전 제공됩니다.

추석연휴 9/20~9/23 강의없음

| 향후 과정 | 강의 내용 | 강의 일정 |
|----------------|--------|----------------|
| 1순환 B코스 (143회) | 기본이론강의 | 11월 ~ 2011년 2월 |
| 2순환문제특강 (88회) | 문제풀이강의 | 3/1 ~ 5/17 |
| 3순환요약특강 (36회) | 핵심요약정리 | 5/18 ~ 6/18 |

| | |
|------------------|---|
| 근로자고용환급과정 | <p>1차야간반 신청일 : 6월 10일 ~ 7월 1일까지</p> <p>구비서류: 수강지원훈련신청서,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본인명의통장사본, 카드결제시 본인명의카드 ※ 직장인능력개발카드소지자도 해당됩니다.</p> |
|------------------|---|



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300m 거리 (관악구청 맞은편)
문의사항 : 887-9161~3 / 871-9161~2 Fax : 871-9163 e-mail:seoullaw@hitel.net